

보 상 계 획 공 고

서울지방국토관리청(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)에서 시행하는 관내 도로개선 사업[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-32호('23.9.8.)]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토지보상법')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의 명칭 및 보상 관련 사항

사 업 명	사업 위치	보상예정 필지(면적)	보상 담당기관 (전화번호)	공사(현장) 관계자	
				시공사	전화번호
국도3호선 연천 신서 대광리 일원 외 8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	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일원	1필지 (46㎡)	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(031-820-1779, 보상)	광명산업(주)	031-677-5858

2. 보상 대상: 위 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(지하)물건 등(권리 포함)

※ 편입 토지 등의 세부목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(scmo.molit.go.kr/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/공지사항)에 게재하고,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
3. 열람(이의신청) 기간 및 열람 장소

- 가. 기간: 2023.10.6. ~ 2023.10.20.
- 나. 장소: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)

4. 보상시기: 2023년 11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(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)

※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,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.

5. 보상 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대상 및 금액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,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.
- ※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·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.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서명 또는 날인 필요)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절차: 보상계획 공고·열람 → 감정평가 의뢰·실시 → 보상금 산정 → 보상협의 요청

6. 기타

- 가.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(수량)이 변경(편입제외 포함)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에 관해서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.
- 나.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문의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를 대신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

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